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1. 개정사유

- (훈련대상 확대) 외국 국적자 중 장기체류비자 소지자(거주권자 <F2>)가 일학습병행에 참여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외부위원 위촉배제 기준 추가) 공단 타 사업에서 특정 사유로 인해 배제처분을 받은 경우 일학습병행 외부위원으로 참여 제한
- (외부위원 회피 조항 신설)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 및 미이수 시 조치사항, 반려 의무화 등 기준 정비
 - 기업현장교사 기본교육 1단계 이수 시 훈련과정 개발진으로 참여 가능토록 하고, 훈련실시 신고 전까지는 기업전담인력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세부 기준 마련
 - 훈련실시 신고 승인과 훈련비 등 비용 지급 시 교육 이수 여부 확인하여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를 시행토록 함
- (기업전담인력 수당 회수 기준 마련) 해당 기업전담인력(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유형별 교육 이수 여부를 수당 회수 판단 기준으로 하여 미이수 인원에 대해서만 회수(규칙 개정 이후 적용)
- (행정처리 기준 명확화) 처리 기간의 계산, 연장 등을 일학습병행 업무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고, 처리 기간 적용 예외 사유 추가
- (외부위원 수당 기준 개편) 진단·컨설팅 및 모니터링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 컨설팅 기준으로 통합하여 수당 지급기준 정리

2. 주요내용

가. 훈련대상 확대(제13조)

| 현 행 | 개 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에게만 제한적으로 참여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완화 및 고용보험 가입 대상 외국국적자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거주권자(F2) 참여 허용 |

나. 외부위원 위촉배제 기준 추가 및 회피기준 마련(제11조)

| 현 행 | 개 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위원 위촉 배제 사유로 금품·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위촉배제 사유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타 사업에서 해촉, 영구정지 등을 받은 경우를 위촉배제 기준으로 추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위원 스스로 회피하는 근거 규정 마련 |

다.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와 관련한 조항 정비(제6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별표6(신설))

| 현 행 | 개 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전담인력의 교육 이수 세부 기준 및 유예기준 등 마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과정 개발진으로 기본교육을 이수한 기업현장교사를 포함하여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과정 개발지침에서 규정된 개발진의 자격을 갖춘 기업현장교사를 포함하여 훈련과정 개발진 구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현장교사는 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 HRD담당자는 훈련 실시 전일까지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하고 미이수 시 반려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는 훈련실시 신고 전까지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하고 미이수 시 반려 의무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당을 10일 내 결정하여 지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된 별표 6 기준 적용 ○ 수당 지급 시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의무화 |

라. 기업전담인력 수당 회수 기준 마련(제26조)

| 현 행 | 개 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전담인력의 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미이수한 전담인력에 해당하는 수당 회수 |

마. 행정처리 기간 기준 명확화(제29조, 제30조, 제32조)

| 현 행 | 개 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비 등 수당을 10일 이내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리기간 연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신청 검토, 단축·연장 승인 등 일학습병행 전반의 행정처리 기간 규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훈련이 의심되는 경우, 훈련비 지급 등 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처리 기간의 예외로 처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신청 처리 기간의 계산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 기간의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바. 상위규정 조문수정(제3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사. 자구수정(제2조, 제7조, 제1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별표1, 별표7)

아. [별표 6]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 관련 세부기준(제18조, 제19조 관련) : <붙임1>

자. [별표9] 외부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33조 관련) : <붙임2>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개 정 사유 |
|---|--|-----------------------------|
| <p>제2조(정의)</p> <p>1.···5. (생 략)</p> <p>6. “모니터링”이란 훈련현장 방문, 전화, 면담, 훈련진단, 컨설팅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얻은 …………… 부정·부실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거나 연구용역·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p> <p>7. (신 설)</p> <p>7. “일학습병행 지원기관”이란 일학습병행 기업 발굴,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일학습전문지원센터, 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 관계부처전담기관을 말한다.</p> <p>제3조(일학습병행 사업수행) ① ~ ② (생 략)</p> <p>③ 이사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일학습병행…………… 위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 <p>제2조(정의)</p> <p>1.···5. (현행과 같음)</p> <p>6. <u>“진단 및 컨설팅”</u>이란 훈련현장 방문, 전화, <u>화상</u>, 면담, 훈련진단, 컨설팅 및 <u>「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u>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통해 <u>훈련준비, 훈련상황, 평가 등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활동을 말한다.</u></p> <p>7. <u>“모니터링”이란 진단 및 컨설팅에도 불구하고 미흡사항이 동일·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부정·부실 훈련 예방을 목적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u></p> <p>8. “일학습병행 지원기관”이란 일학습병행 기업 발굴,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u>기관을 말한다.</u></p> <p>제3조(일학습병행 사업수행) ① ~ ② (생 략)</p> <p>③ 이사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u>한국직업능력연구원</u>과 일학습병행 성과관리 지원(연구·조사 포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 <p>○ 자구수정</p> <p>○ 자구수정</p> |

| | | |
|--|--|--|
| <p>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예산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제6조(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p> <p>①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기업현장교사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 교·강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개발진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종 전문가를 추가하여 개발진을 구성할 수 있다. ……………</p> <p>② (생 략)</p> <p>③ 지역본부·지사장은 제2항의 훈련과정 개발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p> <p>제7조(훈련과정 인정 절차)</p> <p>① (생 략)</p> <p>② 제1항의 인정신청은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PDMS를 ……………</p> <p>③ ~ ⑦ (생 략)</p> <p>제11조(외부위원 위촉배제) ① (생 략)</p> <p>1. … 5. (생 략)</p> <p>6. 훈련과정 검토위원이 훈련과정 개발진으로 참여한 경우: 2년</p> <p>7. (신 설)</p> | <p>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예산을 <u>한국직업능력연구원</u>과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제6조(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p> <p>① 사업주는 <u>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정한 개발자의 자격 등을 갖춘 기업현장교사를 포함하여</u>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진을 구성하여야 하며, <u>지역본부·지사장은 기업현장교사가 개발자의 자격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고 훈련과정 개발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지역본부·지사장은 제2항의 훈련과정 개발신청에 대하여 <u>접수일</u>로부터 10일 이내 ……………</p> <p>제7조(훈련과정 인정 절차)</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제1항의 인정신청은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위원회 개최 <u>이전 지정한 날</u>까지 PDMS를 ……………</p> <p>③ ~ ⑦ (현행과 동일)</p> <p>제11조(외부위원 위촉배제)</p> <p>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훈련과정 <u>심사</u>위원이 훈련과정 개발진으로 참여한 경우: 2년</p> <p><u>7. 공단 내 타 사업에서 해촉, 영구정지 등을 받은 경우 : 그 사업에서</u></p> | <p>○ 기업현장교사 교육 이수 기준 정비 및 확인 의무화</p> <p>○ 제29조 처리기간의 기산점을 접수일로 정함에 따라 수정</p> <p>○ 자구 수정</p> <p>○ 위촉배제 기준 추가</p> <p>○ 회피기준 마련</p> |
|--|--|--|

| | | |
|---|---|--|
| <p>② ~ ③ (생략) ④ (신설)</p> <p>제13조(학습근로자 요건) 1. … 2. (생략) 3.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자</p> <p>제14조(훈련실시 신고) ① ~ ④ (생략) 1. ~ 5. (생략) 6. 학습기업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 과정 위탁…………… 7. 학습기업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정 위탁……………</p> <p>제16조(훈련중지 및 재개) ①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의 …………… 지역본부·지사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 <p><u>정한 기간에 따름</u>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외부위원은 심사 대상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단, 외부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 이사장 및 지역본부·지사장은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u></p> <p>제13조(학습근로자 요건) 1. … 2. (현행과 같음) 3.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자 중 <u>거주권자(F2)</u>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자</p> <p>제14조(훈련실시 신고) ① ~ ④ (종전과 동일) 1. ~ 5. (현행과 동일) 6. 학습기업이 「<u>국민 평생직업 능력 개발법</u>」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 과정 위탁…………… 7. 학습기업이 「<u>국민 평생직업 능력 개발법</u>」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정 위탁……………</p> <p>제16조(훈련중지 및 재개) ①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의 …………… 지역본부·지사장은 <u>접수일</u>로부터 1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 <p>○ 훈련대상 확대</p> <p>○ 상위법 수정</p> <p>○ 제29조 처리기간의 기산점을 접수일로 정함에 따라 수정</p> |
|---|---|--|

| | | |
|---|--|--|
| <p>②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에 따른 중지 …… 지역본부·지사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17조(훈련기간 단축·연장) ① 지역본부·지사장은 …… 단축·연장 신청서를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18조(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지정·운영)</p> <p>① ~ ② (생 략)</p> <p>③ 기업현장교사로 지정된 사람은 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훈련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생단계 과정 ……</p> <p>④ HRD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훈련과정 실시신고 전일까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 기업현장교사 등 교육연수… …… 이수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전담인력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지역본부·지사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훈련과정 개발신청과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p> <p>제19조(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p> | <p>②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에 따른 중지 …… 지역본부·지사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동일)</p> <p>제17조(훈련기간 단축·연장) ① 지역본부·지사장은 …… 단축·연장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동일)</p> <p>제18조(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지정·운영)</p> <p>① ~ ② (현행과 동일)</p> <p>③ 기업현장교사로 지정된 사람은 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훈련실시 신고 전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기본교육 이수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p> <p>④ HRD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기본교육을 훈련실시 신고 전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기본교육 이수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p> <p>⑤ 기업전담인력이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지역본부·지사장은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신고를 반려하여야 한다. 단, 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본교육을 단기적으로 이수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6의 유예기준에 따른다.</p> <p>제19조(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p> | <p>○ 제29조 처리기간의 기산점을 접수일로 정함에 따라 수정</p> <p>○ 제29조 처리기간의 기산점을 접수일로 정함에 따라 수정</p> <p>○ 기업전담인력 이수 적용 시기 개선</p> <p>○ 자구수정</p> <p>○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 의무화</p> |
|---|--|--|

| | | |
|---|--|---|
| <p>자 변경 및 추가) ① 학습기업은 제18조제1항에 …… 규정 제9조 제6항에 따라 변경사항에 …</p> <p>② 추가인력은 HRD-Net에 등록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정하는 양성교육을 이수…</p> <p>③ 추가인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양성교육을 ……</p> <p>④ 지역본부·지사장은 추가인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양성교육을 이수 ……</p> <p>제20조(내부평가) ① 규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내부평가 통과 여부를 판정하는 평가는 능력단위별 또는 교과목별 훈련진도를 100분의 80이상 시점부터 실시한다. 다만, 최종 …… 실시할 수 있다.</p> <p>제24조(훈련비 등 신청 및 지급) ① 규정 제35조에 따라 …… 지역본부·지사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훈련비 등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훈련비, 숙식비, 훈련장려금 …… HRD-Net을 통해 지역본부·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역본부·지사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6에 따른 지원기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26조(훈련비 등의 반납) 지역본부·지사장은 제24조에 따른 훈련</p> | <p>변경 및 추가) ① 학습기업은 제18조제1항에 …… 규정 제9조제7항에 따라 변경사항에 ……</p> <p>② 추가인력은 HRD-Net에 등록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교육을 이수…</p> <p>③ 추가인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교육을 ……</p> <p>④ 지역본부·지사장은 추가인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교육을 이수 …</p> <p>제20조(내부평가) ① 규정 제32조제3항에 따라 내부평가 통과 여부를 판정하는 평가는 능력단위별 또는 교과목별 훈련진도를 100분의 80이상 시점부터 실시한다. 다만, 최종 …… 실시할 수 있다.</p> <p>제24조(훈련비 등 신청 및 지급) ① 규정 제35조에 따라 …… 지역본부·지사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훈련비 등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훈련비, 숙식비, 훈련장려금 …… HRD-Net을 통해 지역본부·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지사장은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7에 따른 지원기준…</p> <p>제26조(훈련비 등의 반납) ① 지역본부·지사장은 제24조에 따른 훈련비,</p> | <p>○ 상위규정 연결 오류 수정</p> <p>○ 제29조 처리기간의 기산점을 접수일로 정함에 따라 수정</p> <p>○ 제29조 처리기간의 기산점을 접수일로 정함에 따라 수정</p> <p>○ 수당 지급시 교육 이수 확인 의무화</p> |
|---|--|---|

| | | |
|---|--|---|
| <p>비, 숙박비, 훈련장려금, 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사무규정」 ……편입하여야 한다.</p> <p>② (신 설)</p> <p>제29조(비용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 ① 지역본부·지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 비용신청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 처리기간을 한 차례 재연장할 수 있다.</p> <p>1. ~ 4. (신 설)</p> <p>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0조(비용신청에 대한 처리의 예외) 지역본부·지사장은 부정훈련</p> | <p>숙식비, 훈련장려금, 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사무규정」 ……편입하여야 한다.</p> <p>② 기업전담인력수당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각에 해당하는 수당을 회수 조치한다.</p> <p>제29조(처리기간) ① 지역본부·지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처리기간을 10일 이내 1회 연장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청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p> <p>1. 학습기업 지정 신청 검토 : 접수일로부터 3주</p> <p>2. 훈련과정 개발 신청 승인 : 접수일로부터 10일</p> <p>3. 훈련과정 중지·재개, 단축·연장 승인 : 접수일로부터 10일</p> <p>4. 훈련비 등 지급 결정 : 접수일로부터 10일</p> <p>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역본부·지사장은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0조(처리기간 적용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에</p> | <p>○ 기업전담인력수당 회수 기준 마련</p> <p>○ 행정처리 기간 명확화</p> <p>○ 상위법령의 민원 처리기간 기산일에 따라 기존 신청일에서 접수일로 수정</p> <p>○ 행정처리 기간 적용 예외 사유</p> |
|---|--|---|

| | | |
|--|--|--|
| <p>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에 따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훈련비 등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p> | <p><u>다른 처리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1. 부정훈련으로 의심되어 「<u>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u>」 제36조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p> <p>2. 사업주가 「<u>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p> | <p>추가</p> |
| <p>제32조(기간의 계산) 비용신청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초일을 산입하되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은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② (신 설)</p> | <p>제32조(기간의 계산) ① <u>행정 처리 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하고 접수일을 첫날로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u></p> <p>② <u>행정 처리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초일을 산입하되 기간의 마지막 날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단,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u></p> | <p>○ 제29조 처리기간의 기산점을 접수일로 정함에 따라 수정</p> <p>○ 행정처리 기간의 계산 방법 정비</p> |
| <p>제33조(수당 및 여비의 지급) 이사장 및 지역본부·지사장은 …… 심사위원회,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별표 8에 따른 ……</p> | <p>제33조(수당 및 여비의 지급) 이사장 및 지역본부·지사장은 …… 심사위원회, <u>진단·컨설팅</u> 및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u>별표 9</u>에 따른 ……</p> | |
| <p>제8장 모니터링</p> | <p>제8장 <u>진단·컨설팅 및 모니터링</u></p> | <p>○ 자구수정</p> |
| <p>제34조(모니터링 실시) 지역본부·지사장 및 공동훈련센터장은 규정 제41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실</p> | <p>제34조(<u>진단·컨설팅 및</u> 모니터링 실시) 지역본부·지사장 및 공동훈련센터장은 규정 <u>제40조</u>에 따른 <u>진단·</u></p> | |

| | | |
|---|---|--|
| <p>시 결과를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p> <p>제35조(방문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p> <p>① 지역본부·지사장은 훈련 현장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지역본부·지사장은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에 ………</p> <p>③ 지역본부·지사장은 모니터링 실시 결과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부정한 방법 ………</p> <p>[별표6]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지원기준</p> <p>*기업현장교사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의의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과정 자격 인증서를 보유(심화과정 이수)하고 ………</p> | <p>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p> <p>제35조(진단·컨설팅 및 모니터링의 방법, 절차 등)</p> <p>① 지역본부·지사장은 대면 방문 및 비대면의 방식으로 진단·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지역본부·지사장은 대면 방문 및 비대면 방식의 진단·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에 ………</p> <p>③ 지역본부·지사장은 진단·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결과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p> <p>[별표7]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지원기준</p> <p>*기업현장교사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의의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심화교육을 이수하고 학습근로자 훈련 및 지원활동…………</p> | |
|---|---|--|

[별표 1] 현행

일학습병행 행정처리 관할 소속기관(제3조제2항 관련)

□ 기업의 본사와 지점의 고용보험관리번호가 독립적으로 부여되어 “[본사 또는 개별 지점](개별 사업장)이 학습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 행정처리 단계 | 행정처리 관할 소속기관 | |
|-------------------------|-------------------|-----------------------|
| | 단독기업형 참여형태 | 공동훈련센터형 참여형태 |
| 학습기업 지정신청 (접수, 약정체결) |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
| 현장심사 | | |
|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위원회 개최 | 일학습과정개발센터 | |
| Off-JT 훈련과정 인정 |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
| OJT 훈련과정 인정 | |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 과정연계 관리 | |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
| 훈련실시 관리 | |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
| 학습 관리 (학습일지, 학습근로자) | |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 평가 관리 | |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
| 결과관리 | | |
| 비용관리(Off-JT) | |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 비용관리(OJT) | | |
| 비용관리(전담자수당) | | |
| 모니터링 | | 개별 사업장 관할 공동훈련센터 |
| 훈련비 및 수당 회수 | |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별표 1] 개정안

일학습병행 행정처리 관할 소속기관(제3조제2항 관련)

□ 기업의 본사와 지점의 고용보험관리번호가 독립적으로 부여되어 “[본사 또는 개별 지점](개별 사업장)이 학습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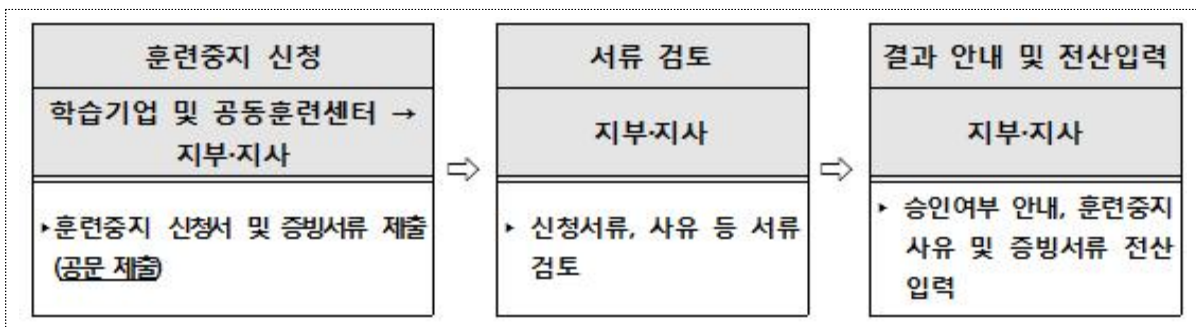
| 행정처리 단계 | 행정처리 관할 소속기관 | |
|-------------------------|-------------------|-----------------------|
| | 단독기업형 참여형태 | 공동훈련센터형 참여형태 |
| 학습기업 지정신청 (접수, 약정체결) |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
| 현장심사 | | |
|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위원회 개최 | 일학습과정개발센터 | |
| Off-JT 훈련과정 인정 |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
| OJT 훈련과정 인정 | |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 과정연계 관리 | |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
| 훈련실시 관리 | |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
| 학습 관리 (학습일지, 학습근로자) | |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 평가 관리 | |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
| 결과관리 | | |
| 비용관리(Off-JT) | |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 비용관리(OJT) | | |
| 비용관리(전담자수당) | | |
| 진단·컨설팅 및 모니터링 | | 개별 사업장 관할 공동훈련센터 |
| 훈련비 및 수당 회수 | |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별표 4] 현행

훈련중지 및 훈련재개 기준(제16조 관련)

- 적용대상 : 산업형 과정 훈련에 참여중인 학습근로자
- 훈련 중지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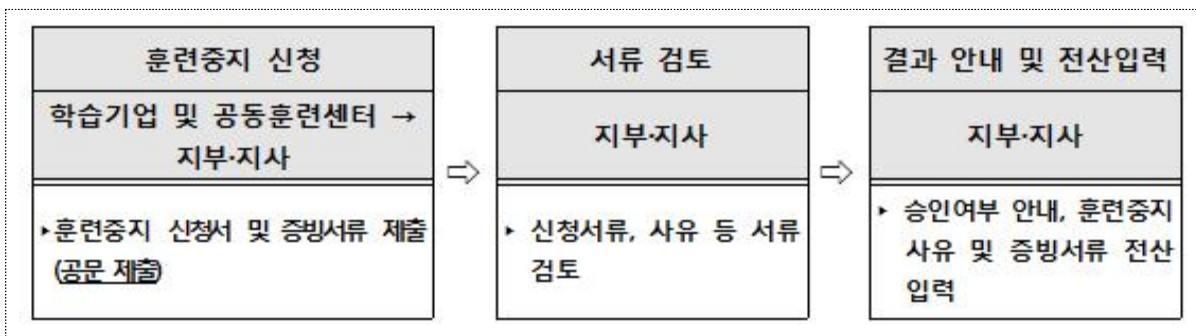
| 구분 | 내용 |
|---------|--|
| 신청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 신청주체 | ○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
| 신청기한 | ○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
| 신청방법 | ○ 증빙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에게 신청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관련 서류 각 1부 ※ 별지 제4호 서식 참고 |
| 중지 가능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지기간*+3개월** * 중지기간 : 중지사유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내 ** 제16조제2항의 사유소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한 적용 |
| 승인기준 | ○ 지역본부·지사에서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여부 결정 |
| 행정사항 | ○ 상기 사유로 인한 훈련중지의 경우 중도탈락률 산정 시 제외 |

[별표 4] 개정안

훈련중지 및 훈련재개 기준(제16조 관련)

- 적용대상 : 산업형 과정 훈련에 참여중인 학습근로자
- 훈련 중지

<처리절차>



| 구분 | 내용 |
|------------|--|
| 신청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 신청주체 | ○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
| 신청기한 | ○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
| 신청방법 | ○ 증빙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에게 신청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관련 서류 각 1부 ※ 별지 제4호 서식 참고 |
| 중지 가능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지기간*+3개월** * 중지기간 : 중지사유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내 ** 제16조제2항의 사유소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한 적용 |
| 승인기준 | ○ 지역본부·지사에서 검토 후 접수일 로부터 10일 이내 승인여부 결정 |
| 행정사항 | ○ 상기 사유로 인한 훈련중지의 경우 중도탈락률 산정 시 제외 |

[별표 6] (신설)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 관련 세부기준(제18조, 제19조 관련)

① 훈련실시 신고 시 기업전담인력 기본교육 이수 요건

| 구분 | 교육과정 | 교육방법 | 훈련실시 신고 요건 |
|----------------|------|----------------------|---|
| 기업 현장 교사 | 기본교육 | 1단계(온라인), 2단계(집체) | -학습기업 기준 최소 1명 이상의 기업현장교사는 기본교육 전체(1단계+2단계) 이수 -그 외 기업현장교사는 최소한의 기본교육 (1단계) 또는 이사장이 정한 별도의 교육 이수 |
| HRD 담당자 | | | -학습기업 기준 최소 1명 이상의 HRD 담당자는 기본교육 전체(1단계+2단계) 이수 -그 외 HRD담당자는 최소한의 기본교육 (1단계) 이수 |

② 훈련실시 신고 요건 중 기업전담인력 기본교육 관련 유예기준

- 재직자단계 학위과정(대학연계형, P-Tech, 고속런 마이스터) 및 재학생단계는 학습기업별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전원이 기본교육(1단계)을 이수한 경우 훈련실시 신고 가능
- 단, 훈련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소 1인 이상의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가 기본교육 전체(1단계+2단계)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아래 ③의 기준에 따라 처리
- 재직자단계 비학위과정은 유예기준 적용 제외

③ 훈련실시 신고 승인 이후 기업전담인력 기본교육 관련 실시요건 미준수가 확인된 경우 조치사항

- ① 공단은 훈련실시 승인 이후 1개월 이내*에 기업전담인력으로 지정된 사람의 교육 이수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하며 미이수자가 있을 경우 즉시 해당기업에 시정을 권고하고 훈련비 등의 지급을 보류

* 재학생단계 및 재직자 학위과정(대학연계형, P-Tech, 고속런 마이스터)는 ②의 유예기준에 의한 2개월 유예 후 1개월 이내

- ② 해당 기업은 공단의 시정권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된 경우 공단은 지급 보류된 훈련비 등을 일괄 지급
- ③ 해당 기업이 공단의 시정권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도·점검으로 연계하여 행정처분 결과에 따름

[별표 8] **현행**

외부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33조 관련)

| 지급항목 | 수당 지급액 |
|--------------------------------|---|
| 학습기업 현장심사 | 10만원/1기업 |
|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 4시간 미만 20만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0만원, 8시간 이상 40만원 |
|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위원회 | (서류 검토) - (집체) 4시간 미만 20만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0만원, 8시간 이상 40만원 - (비집체) 훈련과정 당 5만원 (현장 검토) 훈련과정당 15만원 - 단 훈련장소가 다수일 경우 각각의 훈련장소별로 훈련과정 수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 - '현장 검토'은 1일 4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모니터링 | 3시간 미만 10만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5만원, 6시간 이상 20만원 |
| 컨설팅 | 4시간 미만 20만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0만원, 8시간 이상 40만원 |

※ 수당은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여비는 공단 여비규칙을 적용

[별표 9] 개정안

외부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33조 관련)

| 지급항목 | 수당 지급액 |
|--------------------------------|---|
| 학습기업 현장심사 | 10만원/1기업 |
|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 4시간 미만 20만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0만원, 8시간 이상 40만원 |
|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위원회 | (서류 검토) - (집체) 4시간 미만 20만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0만원, 8시간 이상 40만원 - (비집체) 훈련과정 당 5만원 (현장 검토) 훈련과정당 15만원 - 단 훈련장소가 다수일 경우 각각의 훈련장소별로 훈련과정 수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 - ‘현장 검토’는 1일 4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u>진단·컨설팅 및</u> <u>모니터링</u> | 4시간 미만 20만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0만원, 8시간 이상 40만원 |

※ 수당은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여비는 공단 여비규칙을 적용